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가합5934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경

변론 종결2023. 3. 10.

판결 선고2023. 4. 7.

주 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4. 27. 체결된 각 계약자 명의변경약정을 788,672,2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788,672,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4. 27. 체결된 각 계약자 명의변경약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추징금 채권

1) C는 2018. 4. 2.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C는 D, E 및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2015. 7. 1.부터 2016. 12. 24.까지 총 242회에 걸쳐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40,321개를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D 등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19. 1. 11. C에게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 및 벌금 1,333,816,626,358원을 선고하였으며, 관세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으로서 'D와 공동하여 2,010,238,274,000원을 추징한다.'는 부가형을 선고하였다(2018고합127호).

3)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C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7. 24.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C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666,908,313,179원을 선고하였으며, 관세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으로서 'D와 공동하여 2,010,238,274,000원을 추징한다.'는 부가형을 선고하였고(2019노56호, 이하 위 추징판결을 '이 사건 추징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C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 3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도11489호).

나. C의 각 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

1) C는 2017. 3. 13. F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보험료로 각 431,640,000원, 합계 863,280,000원을 일시납부하였다.

2) C는 2018. 4. 27.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모두 처인 '피고 A'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은 2020. 5. 22. 기준 각 395,086,126원, 합계

790,172,252원이다.

다. 피고 A의 명의변경약정 등

피고 A는 2018. 7. 30.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모두 동생인 '피고 B'으로 변경하였고, 피고 B는 2019. 3. 2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장해수익자와 사망수익자를 A, G에서 모두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라. C와 피고 A의 이혼

C는 1993. 5. 10. 피고 A와 혼인하여 슬하에 G(1994년생)과 H(2000년생)을 자녀로 두었고, C는 피고 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019. 1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2019년46427호, 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고 한다).

1. C와 피고 A는 이혼한다.
2. C는 피고 A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2020.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C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C와 피고 A는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4. 피고 A는 C와 피고 A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병원 치료비, 재활비 등에 대하여 C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C는 위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금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5. C와 피고 A는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재산분할청구는 제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3, 을가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 및 갑 5, 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5. 7. 1.부터 2016. 12. 24.까지 금괴 40,321개를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2018. 3.경 C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을 거쳐 검찰은 2018. 4. 2. 부산지방법원에 C를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실, 부산지방법원은 2018. 4. 3. C가 위와 같은 범죄혐의로 불법수익을 취득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C 소유의 압수물반환청구권,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징보전결정(2018초기553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 당시인 2018. 4. 27. 이 사건 추징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추징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C에 대하여 2,010,238,274,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제1심 판결(2019. 1. 11.) 및 이 사건 추징판결(2019. 7. 24.)이 선고되고 이후 확정되어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추징금채권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갑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4. 3.경 C 소유의 재산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물 현금 20억 원, 미화 359만 달러, 일화 4억 엔에 대한 반환청구권,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이 사건 추징금 판결에 따라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인 2,010,238,274,000원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이 체결된 2018. 4. 27. C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모두 피고 A로 변경한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서 C가 피고 A에게 재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을 위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양도한 것과 같으므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사해의사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추정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추징보전결정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지 않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채권을 처인 피고 A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명의변경약정에 대한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C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을 취소하는 것은 일신전속권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고,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채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이고, 이 사건 명의변경약정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이 피고 A와 C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C가 피고 A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는바, 피고 A에게 적어도 1억 2,000만 원의 위자료청구권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C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이혼조정이 2019. 11. 29.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지급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채권이 C와 피고 A의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은 2018. 4. 27. 체결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19. 11. 29.에야 이 사건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다.

②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 무렵 C와 피고 A 사이에 재산분할협의서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이혼조정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채권이 포함되지 않았고, 달리 당시 C와 피고 A 사이에 그 전에 있었던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갈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자녀의 장애로 인하여 치료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다는 피고 A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이혼조정 당시 C와 피고 A는 위자료에 관하여 C가 피고 A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추후 별도로 합의하기로 정하였으며, 자녀들의 교육비, 병원 치료비, 재활비 등에 관하여는 피고 A가 C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채권 내지 이 사건 명의변경약정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혼조정 이후 피고 A와 C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④ C가 2017. 3. 1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합계 863,280,000원을 일시납부한 점, C가 2015. 7. 1.부터 2016. 12. 24.까지 금과 40,321개를 밀반출하는 등 관세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로 얻은 수익이 약 75억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 달리 C가 납부한 보험료의 형성이나 유지, 증식 등에 피고 A가 기여하였다거나 협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C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가액배상 가)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장성보험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 회복을 명하는 방식의 원상회복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함이 타당하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이 2020. 5. 22. 기준 790,172,25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 합계 863,280,000원을 일시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 일 무렵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채권의 공동담보가액은 788,672,252원(= 790,172,252원 - 1,500,000원)이 된다.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이전받은 전득자 피고 B은 위 해지환급금 790,172,252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공동담보가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 A 사이에 2018. 4. 27. 체결된 이 사건 각 명의변경약정을 788,672,252원(= 790,172,252원 - 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788,672,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원

판사이진경

판사이동형

별지